

##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로 3개월 만에 약 2.4조원의 적립금이 이전되었습니다.

- 향후 가입자 편익을 더 높이기 위해 신청 전 이전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사전조회 서비스’를 오픈하고, 제도 간 이전(DC→IRP)도 가능토록 할 계획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24.10.31.) 이후 3개월('25.1.31. 까지) 동안 적립금 약 2.4조원, 3.9만건이 동 서비스를 통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전된 적립금(2.4조원) 중 약 1.8조원(75.3%)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이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가입자는 본인에게 적합한 퇴직연금 사업자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는 등 선택권이 확대되었다고 평가된다.

- \* 나머지 0.6조원(24.7%)은 실물이전 불가 사유(수관회사와 이관회사간에 제공하는 상품이 상이한 경우 등)로 상품 매도 또는 해지를 통해 현금화되어 이전

이러한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는 기존 상품의 매도(해지)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이나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비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퇴직연금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향후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업권별 이동 현황 】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이전(이관회사→수관회사)된 전체 적립금 중 은행→은행(7,989억원) 이동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가운데, 은행→증권사(6,491억원), 증권사→증권사(4,113억원) 등 순(順)\*으로 이동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건수 기준으로는 은행→은행(16,635건), 은행→증권사(14,003건), 증권사→증권사(6,350건) 등 순(順)

이전에 따른 순유입 금액 기준으로는 증권사는 +4,051억원 순증을 기록한 반면, 은행은 △4,611억원 순유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증권사로의 이동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업권간 실물이전 규모(억원)					업권별 유·출입 규모*(억원)					
이관 수관	은행	증권	보험	합계	업권	유입		유출		순유입
						(동업권내제외)**	(동업권내제외)**			
은행	7,989	6,491	843	15,323	은행	10,712	(2,723)	15,323	(7,334)	△4,611
증권	2,382	4,113	665	7,160	증권	11,211	(7,097)	7,160	(3,047)	+4,051
보험	341	606	628	1,575	보험	2,136	(1,508)	1,575	(947)	+560
합계	10,712	11,211	2,136	24,058	합계	24,058	(11,328)	24,058	(11,328)	-

\* 동일 업권내 유·출입 포함 (예시 : 은행 유입액 = 타 은행, 증권, 보험회사로부터 유입된 금액의 합산)

\*\* (괄호안) 동일 업권내 유·출입 제외 (예시 : 은행 유입액 = 증권, 보험회사로부터 유입된 금액의 합산)

## 【 제도별 이동 현황 】

퇴직연금 제도별로는 실물이전 서비스로 이전된 적립금 2.4조원 중 개인형 IRP(이하, 'IRP')가 9,229억원(38.4%), 확정급여형(이하, 'DB')이 8,718억원(36.2%), 확정기여형(이하 'DC', 기업형IRP 포함)이 6,111억원(25.4%)을 차지하는 등 제도별로 고르게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 건수 기준으로는 IRP가 23,691건, DC가 14,782건, DB가 695건 순(順)

제도별 순유입 금액 기준으로는 IRP 및 DC는 증권사가 순증(각각 +3,753억원, +2,115억원)을 기록한 반면 DB는 보험사 및 은행이 순증(각각 +1,050억원, +768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운용주체\*에 따라 선호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권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 IRP·DC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운용수익을 수취하는 한편, DB는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되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제도별 실물이전 유·출입 규모*(억원)									
업권	DB			DC			IRP		
	유입	유출	순유입	유입	유출	순유입	유입	유출	순유입
은행	5,771	5,004	+768	2,809	4,622	△1,813	2,132	5,697	△3,566
증권	879	2,697	△1,817	3,243	1,128	+2,115	7,088	3,335	+3,753
보험	2,068	1,018	+1,050	59	361	△302	9	196	△187
합계	8,718	8,718	-	6,111	6,111	-	9,229	9,229	-

\* 동일 업권내 유·출입 포함 (예시 : 은행 유입액 = 타 은행, 증권, 보험회사로부터 유입된 금액의 합산)

## 【 향후 계획 】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은 실물이전을 원하는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계좌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실물이전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추가 개발·오픈할 계획이다.

\* 현재는 가입자가 실물이전 수관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 신청한 이후에나 기존 계좌 내 보유 중인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음

DC 계좌에서 타사 IRP 계좌로의 실물이전도 가능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더욱 확대하고 금융기관 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여 수익률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책임자	과 장	김부경 (044-202-7554)
		담당자	사무관	이상전 (044-202-7657)
담당 부서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	책임자	실 장	이동규 (02-3145-5180)
		담당자	팀 장	김윤조 (02-3145-5190)

## 붙임 1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신청 방법

◆ 실물이전은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수관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수관회사에 이미 퇴직연금계좌가 개설되어있는 경우 이관회사에서도 신청가능

□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이하 '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단,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하여 이관회사에서도 이전신청 가능

○ 이후,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퇴직연금 사업자(이하 '이관회사')가 가입자에게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받게 되며,

\* 가입자가 이관회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상품을 수관회사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및 동일 상품 미취급시 처리방안(현금이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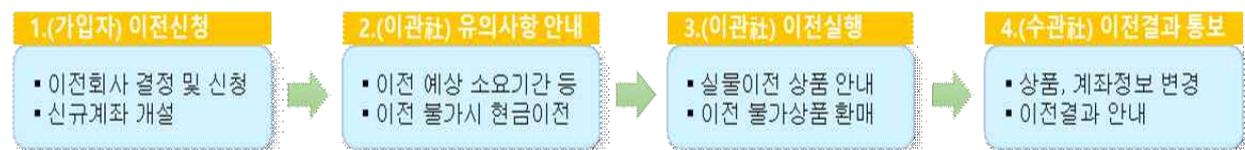
○ 가입자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문자(SMS),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시까지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되며, 환매 등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추가됩니다.

○ 이전할 상품의 목록 및 수량 확인을 위해 실물이전 신청 이후 완료시까지 해당 계좌의 상품 운용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TF의 분배금 지급 등 펀드의 재투자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이전 소요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실물이전 절차 >



## 붙임 2 제도별 업권간 실물이전 결과 ('24.10.31.~'25.1.31.)

※ 퇴직연금 사업자별(이관회사 기준) 실물이전 서비스에 따른 이전 결과를 합산  
 (예시 : A은행 → B은행 : 은행(이관) → 은행(수관) / A은행 → C증권 : 은행(이관) → 증권(수관))

### 【 실물이전 서비스에 따른 제도별 적립금 이전 규모 (억원) 】

제도 전체(DB+DC+IRP)				
수관 이관	은행	증권	보험	합계
은행	7,989	6,491	843	15,323
증권	2,382	4,113	665	7,160
보험	341	606	628	1,575
합계	10,712	11,211	2,136	24,058

DB				
수관 이관	은행	증권	보험	합계
은행	3,892	325	787	5,004
증권	1,632	405	659	2,697
보험	247	149	622	1,018
합계	5,771	879	2,068	8,718

DC				
수관 이관	은행	증권	보험	합계
은행	2,557	2,017	48	4,622
증권	215	908	5	1,128
보험	36	319	6	361
합계	2,809	3,243	59	6,111

IRP				
수관 이관	은행	증권	보험	합계
은행	1,539	4,150	8	5,697
증권	535	2,800	0	3,335
보험	58	138	0	196
합계	2,132	7,088	9	9,229

### 【 실물이전 서비스에 따른 제도별 이전 건수 (건) 】

제도 전체(DB+DC+IRP)				
수관 이관	은행	증권	보험	합계
은행	16,635	14,003	38	30,676
증권	1,305	6,350	21	7,676
보험	213	581	22	816
합계	18,153	20,934	81	39,168

DB				
수관 이관	은행	증권	보험	합계
은행	536	32	8	576
증권	72	18	8	98
보험	13	4	4	21
합계	621	54	20	695

DC				
수관 이관	은행	증권	보험	합계
은행	10,887	2,294	11	13,192
증권	405	651	5	1,061
보험	127	387	15	529
합계	11,419	3,332	31	14,782

IRP				
수관 이관	은행	증권	보험	합계
은행	5,212	11,677	19	16,908
증권	828	5,681	8	6,517
보험	73	190	3	266
합계	6,113	17,548	30	23,691

### 붙임 3 실물이전 대상 퇴직연금 제도 및 상품 범위

#### 【이전 범위】

- 동일한 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만 이전 가능
  - DB 간, DC 간 이전의 경우 해당 기업이 이·수관회사 모두와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실물 이전 가능
  - 개인이 투자하는 DC와 개인형 IRP는 적립금의 전부 이전만 가능하므로 계약 내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는 경우 현금화하여 이전 필요

#### 【이전 대상】

- 특정금전신탁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신탁제공형), ELB·DLB 등), 공모펀드(MMF 제외), ETF 등은 실물이전 가능
  - 다만,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관회사와 수관회사에서 동일 상품을 제공(라인업)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

#### 【제외 대상】

- 일부 상품은 계약 형태, 상품 특성 등에 따라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정 상황 발생 등에 따른 일부 상품\*\*도 실물이전이 불가
  - \* (계약 형태)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 언변들형 계약(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  
(상품 특성)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체 상품(디폴트옵션), 지분증권, 리츠, 사모펀드, ELF, 파생결합증권, RP, MMF, 종금사 발행어음
  - \*\* 상품제공수수료 부과상품(단, 수관회사의 판단으로 실물이전 가능여부 선택 가능), 임의해지 대상 소규모펀드,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 압류 및 질권 설정 상품,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환매불가 펀드 등